

과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강신은

2026년 3월 20일

공사 규정 제170호

과천도시공사 인사규정 중 개정규정

제5조중 제12호와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채용비위"라 함은 채용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13. "비위행위자"라 함은 제12호의 채용비위를 포함하여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직권남용 등 임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

제6조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사적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중 제1항 및 제2항의 "경력경쟁채용"을 "제한경쟁채용"으로 한다.

제11조중 제목 및 같은 조 본문 중 "경력경쟁채용"을 각각 "제한경쟁채용"으로 한다.

제15조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채용비위 등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된 때

제19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취업규정 제44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질병휴직, 같은 항 제2호에 따

른 군입대휴직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정원을 따로 인정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육아휴직자는 5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병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25조제2항 중 “공사 인사세칙”을 “「인사규정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29조(승급)중 “보수규정”을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30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채용비위 관련자 포함)은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제30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비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제32조제1항 중 “보수규정”을 “「보수규정」”으로 한다.

제46조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채용비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규정 제170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03.2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30조 제5항의 승진 및 승급 제한 가산은 규정 시행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p>제1조부터 제4조까지(생략) 제5조(용어의 정의) (생략) 1.~11. (생략) <u><신설></u></p>	<p>제1조부터 제4조까지(현행과 같음) 제5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11. (현행과 같음) <u>12. "채용비위"라 함은 채용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u> <u>13. "비위행위자"라 함은 제12호의 채용비위를 포함하여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직권남용 등 임직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자를 말한다.</u></p>	<p>행안부 기준 반영</p>
<p>제6조(인사위원회) ①(생략) <u><신설></u></p>	<p>제6조(인사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u>②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③ 위원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u> <u>④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u></p>	<p>행안부 기준 반영</p>
<p>②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p>		
<p>제7조부터 제9조까지(생략) 제10조(채용방법)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다. 1.~5.(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은 서류전형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7조부터 제9조까지(현행과 같음) 제10조(채용방법) ① ----- ----- ----- <u>----- 제한경쟁채용 -----.</u> 1.~5.(현행과 같음) ② ----- <u>제한경쟁채용</u> ----- -----.</p>	<p>권익위 권고사항</p>
<p>제11조(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 직원의 직급별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제11조(<u>제한경쟁채용 자격기준</u>) ----- <u>----- 제한경쟁채용 -----.</u></p>	<p>권익위 권고사항</p>
<p>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생략)</p>	<p>제12조부터 제14조까지(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5조(채용의 철회)(생략) <u><신설></u></p> <p>제16조부터 18조까지(생략) 제19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생략) <u><신설></u></p> <p>②~④(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직 및 전보</p> <p>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생략) 제25조(전직) ①(생략) ② 전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 인사세칙으로 한다.</p> <p>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생략) 제29조(승급) 직원의 승급은 보수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0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생략) ②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 승급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승진할 수 없다.</p> <p>1~3.(생략) ③~④ (생략)</p>	<p>제15조(채용의 철회)(현행과 같음) <u>5. 채용비위 등 부정합격 사실이 확인된 때</u></p> <p>제16조부터 18조까지(현행과 같음) 제19조(휴직자 등의 결원보충) ① 현행과 같음) ② <u>취업규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른 질병휴직,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군입대휴직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정원을 따로 인정받은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현원은 3년(육아휴직자는 5년) 이내에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병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의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함한다.</u> ③~⑤(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보직 및 전보</p> <p>제20조부터 제24조까지(현행과 같음) 제25조(전직) ①(현행과 같음) ② -----「인사 규정 시행세칙」-----.</p> <p>제26조부터 제28조까지(현행과 같음) 제29조(승급) -----「보수규정」-----.</p> <p>제30조(승진 및 승급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u>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채용비위 관련자 포함)은 그 처분의 종료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은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u></p> <p>1~3.(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p>	<p>행안부 기준 반영</p> <p>행안부 기준 반영</p> <p>인용규정 명칭 구체화</p> <p>규정 명칭 표기 표준화</p> <p>권익위 권고사항</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u><신설></u></p> <p>제31조(근속승진)(생략) 제32조(특별승진 및 승급) ① 사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28조 및 보수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1.~3. (생략) ②~③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근무평정</p> <p>제33조~제45조(생략) 제46조(징계)(생략) 1.~8.(생략) <u><신설></u>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생략) 제55조(준용규정)(생략)</p>	<p>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비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한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p> <p>제31조(근속승진)(현행과 같음) 제32조(특별승진 및 승급) ① ----- ----- -----「보수규정」----- ----- ----- ----- ----- 1.~3.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근무평정</p> <p>제33조~제45조(현행과 같음) 제46조(징계)(현행과 같음) 1.~8.(현행과 같음) 9. 채용비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현행과 같음) 제55조(준용규정)(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규정 제○○○호)</p> <p>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 00. 00.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30조 제5항의 승진 및 승급 제한 가산은 규정 시행일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p>	<p>행안부 기준 반영</p> <p>규정 표기 표준화</p> <p>행안부 기준 반영</p>

<현행>

[별표 1] (개정 2020.04.02., 2021.11.11., 2025.06.02.)

(제11조 관련)

직급별 **경력경쟁채용** 자격 기준

직급		자 격 기 준
3급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에서 4급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6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기관 등에서 공사 4급에 준하는 직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당해업무의 기술사, 기능장 자격 또는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9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급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에서 5급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기관 등에서 공사 5급에 준하는 직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행정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	○ 당해 업무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체육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한후 당해업무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급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에서 6급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기관 등에서 공사 6급에 준하는 직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행정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	○ 당해업무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체육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급		자 격 기 준
6급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에서 7급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기관 등에서 공사 7급에 준하는 직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행정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	○ 당해업무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후 당해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체육	○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에서 업무직(사무기술)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기관 등에서 공사 7급에 준하는 직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된 분야에서 당해업무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행정	○ 당해업무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	○ 당해업무의 <u>기능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u> ○ 당해업무의 <u>산업기사(간호사 및 1종 대형면허 포함) 자격</u> 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체육	○ 당해업무의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p>※ 경력기간 산정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함 2. 시간선택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 		

○ **경력경쟁채용** 예정 직급별 경력기준

임용예정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직무분야							
일반직 공무원		5급또는 6급	6급또는 7급	7급또는 8급	8급또는 9급	9급	
경찰 공무원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군 인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조교수	전임 강사				
	초·중·고등 학교 교원과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11 적용대상자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12 중대학봉급 액란 적용대 상자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 별표12 중전문대학 봉급액란적 용대상자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판 사·검 사							
관련직무분야박사학위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별표 1] (개정 2020.04.02., 2021.11.11., 2025.06.02. 2026.00. 00)

(제11조 관련)

직급별 제한경쟁채용 자격 기준

직급		자 격 기 준
3급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에서 4급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6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기관 등에서 공사 4급에 준하는 직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당해업무의 기술사, 기능장 자격 또는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9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급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에서 5급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기관 등에서 공사 5급에 준하는 직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행정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	○ 당해 업무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체육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한후 당해업무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급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에서 6급으로 관련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8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기관 등에서 공사 6급에 준하는 직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행정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	○ 당해업무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체육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직급		자 격 기 준
6급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에서 7급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기관 등에서 공사 7급에 준하는 직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행정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	○ 당해업무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후 당해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체육	○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급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공단)에서 업무직(사무기술)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9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기관 등에서 공사 7급에 준하는 직급 이상으로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임용예정된 분야에서 당해업무를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행정	○ 당해업무의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	○ 당해업무의 <u>기능사(간호사 및 1종 대형면허 포함) 이상</u>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체육	○ 당해업무의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p>※ 경력기간 산정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전일제 근무자를 기준으로 함 2. 시간선택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전일제 근무자의 시간에 비례하여 산정 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유로 차별할 수 없음 		

○ 제한경쟁채용 예정 직급별 경력기준

직무분야		임용예정직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일반직 공무원		5급또는 6급	6급또는 7급	7급또는 8급	8급또는 9급	9급	
경찰 공무원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군 인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교육공무원 (사립학교 포함)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조교수	전임강사			
	초·중·고등 학교 교원과기타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11 적용대상자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12 중대학봉급 액란 적용대 상자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12 중전문대학 봉급액란적 용대상자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판 사·검 사							
관련직무분야박사학위소지자		박사학위 소지자					